

工業所有權審判事例

国内事件

商標 拒絕査定

〈大法院 第1部 判決〉(1986. 6. 24)

事件番號 : 85 후 86

裁判長 : 최재호

關與法官 : 윤일영 · 이명희 · 황선영

1. 審判請求人(上告人) : 휴부실리 실베리오(대표 : 부실리실베리오)
2. 被審判請求人(被上告人) : 特許廳長
3. 原審決 : 特許廳 1985. 6. 29字, 1984年 抗告審判(絕) 第351號 審決
4. 主文 : 上告를 棄却한다. 上告費用은 上告인의 부담으로 한다.
5. 理由 :

上告理由를 본다.

原審決에 의하면 原審은 본원商標는 英文字로 크고 굵게 “CHAMP”라 표기하여서된 文字商標이고 引用商標는 “CHAMPION”이라고 크고 굵게 표기한 英文字 밑에 역시 英文字로 “KUKJERUBBER”라 가늘게 표기하여서된 商標인 바 外觀 및 稱號에 있어서는 표기된 英文字가 다르고 또 英文字의 발음도 각기 다른 것이어서 서로 다르다 하겠으나 관념에 있어서는 본원商標 CHAMP에는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戰士, 선수권보유자 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CHAMPION의 俗語임을 알 수 있고 俗語와 雅語는 일반거래 사회에서 같은 뜻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거래 실정임을 감안할 때 비록 본원商標가 引用商標의 요부인 CHAMPION의 俗語임을 영어사전을 찾아봄으로서 알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文字가 가지는 뜻의 객관성은 이를 부정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원商標 CHAMP와 引用商標의 요부인 CHAMPION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가 同意語로 인식하여 같이 공통으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본원商標가 引用商標와 稱號, 外觀에 있어서는

다르다 하겠으나 관념에 있어서는同一性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同種商品이 그指定商品에 사용할 경우 商品出處의誤認混動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判斷하고 있다.

생각컨대 商標의類似與否는 서로同一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同種의商品에 사용되는 2개의商標를 그외관, 칭호, 관념을 객관적, 전체적, 이격적으로 판찰하여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각商品間に誤認混動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判別하는方法에 의하여 判斷하여야 할 것이므로 原審이 이러한觀點에서 본원商標과 引用商標가 비록 稱號와 外觀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관념에서同一하다고 하여 商標法第9條第1項第7號에 의하여 拒絕査定한 초심사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, 거기에 소론과 같은 審理未盡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논지는 이유없다.

그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費用은 敗訴者の負擔으로 하여 關與法官의一致된 意見으로 주文과 같이 判決한다. <略>